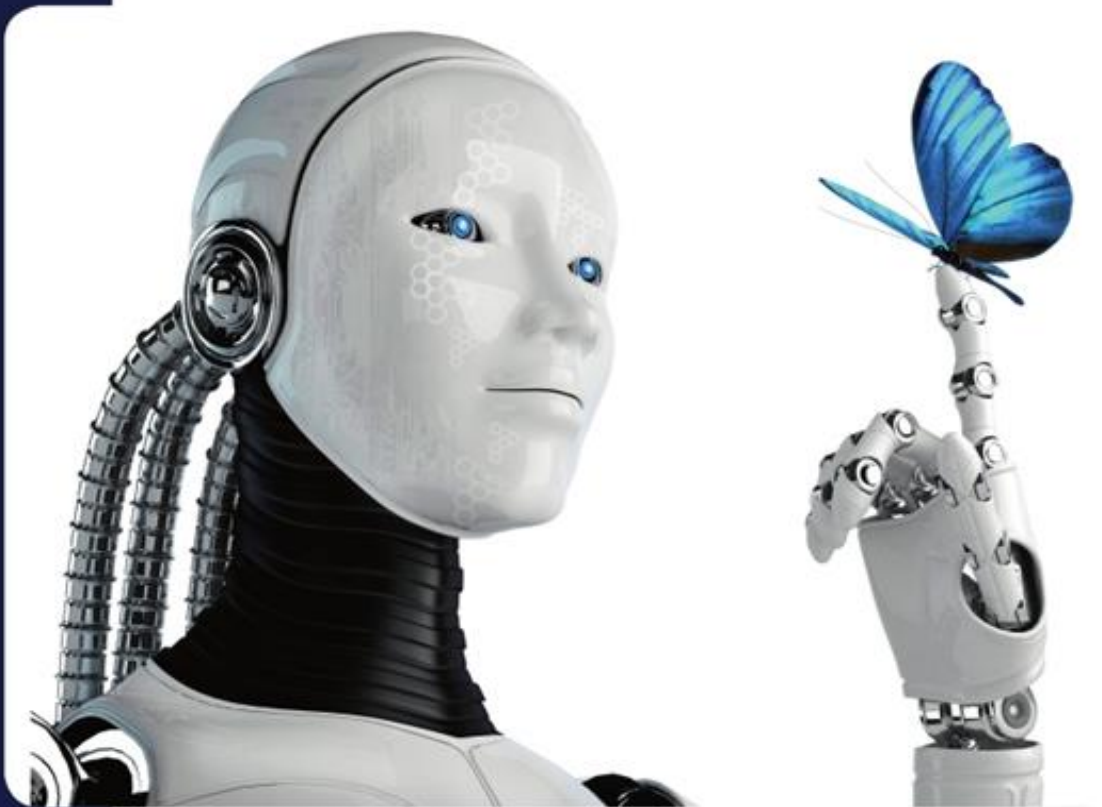


# Newsletter

## June, 2023



# ICR



# 목 차

1. (주)ICR, 일본 VCCI 지정
2. (주)ICR, 10 m 챔버 VCCI 지정
3. ISO 37301 규범준수경영시스템
4. SPS-C KBIA-10104-05-7488 배터리 시험
5. 배터리 모듈 총방전기 추가 셋업
6. 동해시 지진 발생과 원자력발전소 안전 및 내진시험
7. 유해위험기계기구의 KCs 및 CE인증 교육 진행
8.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ICR, 일본 VCCI 지정



## ▣ ICR, 일본 VCCI 지정 완료

ICR은 2023년 3월 20일 일본 VCCI\*에 공인시험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 VCCI (일본 전파장애자주규제협의회)

(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by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s)

업체명	등록번호	등록일	유효기간
주식회사 아이씨알	R-20183 C-20139 G-20178	2023.03.20	2026.03.19

## ▣ VCCI 인증이란?

일본 내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술장치(ITE)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규제하기 위한 비강제 등록 제도입니다.

VCCI는 강제 규격은 아니지만 일본에서 유통·판매를 하려는 ITE기기는 인증을 받도록 권장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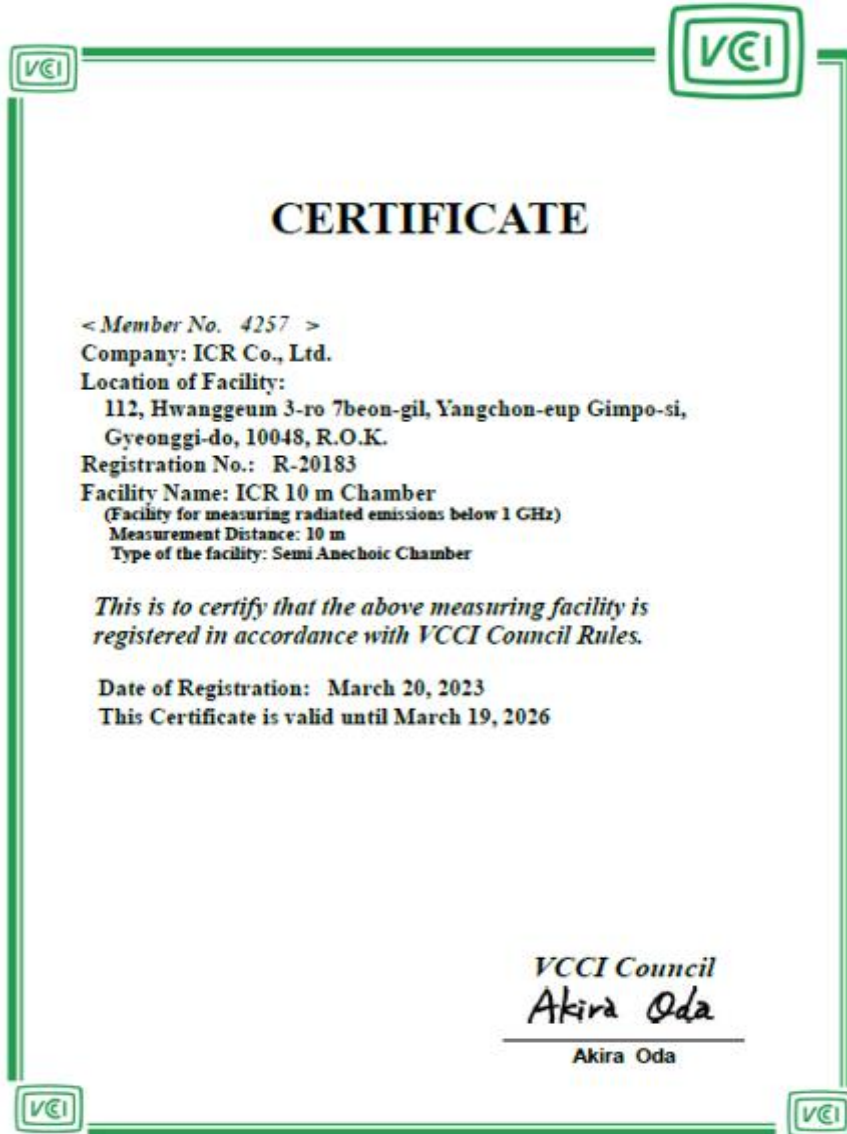
## ▣ 행정 처분

VCCI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VCCI에 인증된 시험소에서 제품 시험 후 발행된 시험 성적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증 후 관련 라벨을 표시하여 제품을 유통하여야 합니다.

# ICR, 10 m 챔버 VCCI 지정



▣ ICR은 현재 운영중인 시험장비 10 m 챔버(Chamber)를 2023년 3월 20일 일본 VCCI에 정식으로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 문의처

전파시험센터 / 박 명 철 수석연구원  
T. 070-5083-2646 / pmc@icrqa.com

# ISO 37301 규범준수경영시스템



## ▣ ISO 37301:2021 규범준수경영시스템에 대하여

ISO 37301은 CMS(규범준수경영시스템)으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기존 ISO 19600:2014에서 새로운 요구사항 기준을 포함하고 강화한 **국제 표준**입니다.

ISO 37301은 조직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률, 규제, 라이선스와 내부 정책 및 절차 등 모든 준수사항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구조화된 접근법을 제공하는 경영시스템입니다.

## ▣ ISO 37301 도입 효과

- 1)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을 통해 조직은 관련 법규, 규제 요구사항, 산업 규범 및 조직 표준은 물론 우수 지배구조 표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모범 사례, 윤리 및 지역사회의 기대를 준수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실증할 수 있습니다.
- 2) 효과적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조직은 건전한 조직 통치와 윤리강령을 지키고자 함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3) 규범 준수를 통해 뇌물에 대한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뇌물 행위를 예방하고 필요한 정책, 절차, 교육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 ISO 37301 규범준수경영시스템



## ▣ ISO 37301과 ESG의 관계

조직이 규범 준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ESG 측면에서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ISO 37301은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이는 기업의 ESG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SG는 조직이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 측면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ISO 37301은 조직이 규제 준수를 관리하고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조직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ISO 37301 규범준수경영시스템



## ▣ ICR\_ISO 37301

현재 ICR은 한국인정기관(KAB)으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은 공인 인증기관으로서, 적격성을 갖춘 검증된 심사원으로 배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인증심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CR은 기업에서 형식적으로 준비하며 시간을 소비하는 인증이 아닌,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ISO 인증을 진행할 것을 고객분들께 약속 드리겠습니다.

 문의처

시스템인증부 / 이재민 대리

T. 070-5083-2612 / lee2750@icrqa.com

## ▣ SPS-C KBIA-10104-05-7488

한국전지산업협회에서 제정한 리튬이차전지 셀 열폭주 유도 시험 방법으로 2022년 3월 31일 제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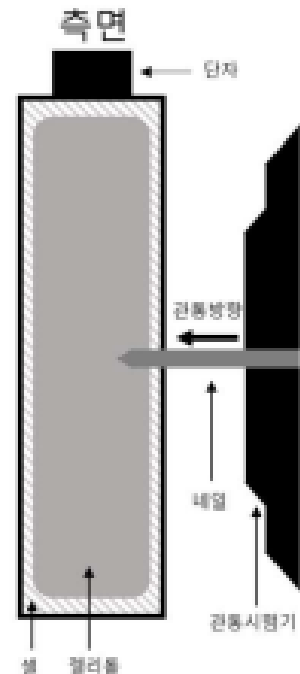
## ▣ 시험 방법

셀의 SOC 조정 후 아래와 같은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1) 히터에 의한 가열
- 2) 관통
- 3) 과충전



<외부 히터 사용 예시>



<관통 예시>



시험 방법	세부 항목
히터 가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히터 설치 : 셀 외부 또는 내부 설치</li><li>• 타입 : 히팅패드, 히팅패널 등</li><li>• 종류 : 필름히터, 세라믹히터 등</li><li>• 히터면적 : 셀 표면의 가장 큰 면적 중 한쪽 면에 50 % 이상으로, 셀 최대 면적보다는 작게</li><li>• 히팅속도 : (5±2) °C/min</li></ul>
관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네일 지름 : 1~3 mm</li><li>• 네일 팁 : 원추형, 각도(20~40도)</li><li>• 관통 속도 : 2 mm/s 이하</li><li>• 네일 재질 : SUS, SKD-11 등</li></ul>
과충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류 : 제조자가 제시한 전류</li></ul>

▣ 열폭주/열전이 시험 관련 정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ICR 배터리시험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배터리 시험 및 인증 문의**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문의처**

배터리시험센터 / 양 철 호 팀장

T. 02-6351-9003 / yangch@icrqa.com

# 배터리 모듈 충방전기 추가 셋업



## ▣ (주)ICR 배터리시험센터, 시험 장비 추가 셋업

평택 배터리시험센터에서는 배터리 성능시험을 위한 모듈용 충방전기와 챔버를 아래와 같이 추가로 셋업하였습니다.

- 모듈 충방전기: 12채널 (200 V, 500 A)
- 1.2m 시험챔버: 항온항습챔버 6대

▣ 5월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기존에 모듈 성능시험으로 8채널, 4챔버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총 20채널, 10챔버를 모듈 성능시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ICR 배터리 모듈 성능시험실



☎ 문의처

배터리시험센터 / 양 철 호 팀장

T. 02-6351-9003 / yangch@icrqa.com

# 동해시 지진 발생과 원자력발전소 안전 및 내진시험



## ▣ 동해시 해역 지진 발생

최근 동해시 부근 해역 내에서 반복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며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월 15일 06시 경 동해시 북동쪽 52 Km, 깊이 31 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표하였습니다.

## ▣ 지진 발생과 원전 정지

이번 지진 발생 지역과 가장 가까운 시설은 경북 울진 소재의 '한울 원전'으로 지진 계측값은 0.01 g 미만으로 지진경보가 발생하지 않은 미약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원전은 지진 계측값에 따라 지진경보(0.01 g), 수동정지(0.1 g), 자동정지(0.18 g) 세 가지로 대응되며, 노형에 따라 설계기준값 (0.2 g, 0.3 g)으로 건설되어 있어 안전합니다.

## ▣ 원자력발전소 설비의 내진시험

(주)ICR은 원자력발전소 설비에 대한 내진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평택사업본부에 내진시험 설비를 구축 중이며, 최근 시험 가동에 돌입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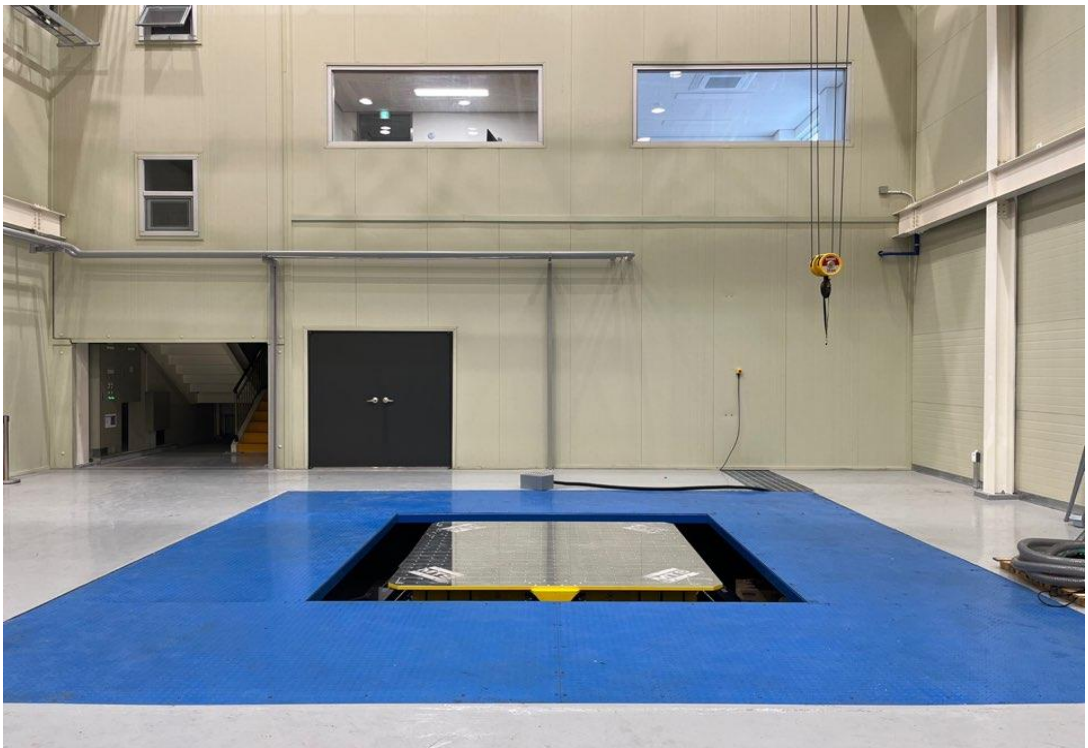
# 동해시 지진 발생과 원자력발전소 안전 및 내진시험



## ▣ 원전 설비에 대한 시험 및 인증범위 확대

(주)ICR은 평택사업본부 내 시험설비 구축이 완료되면, **KOLAS** 인정범위 및 성능검증기관 인증범위 확대를 계획 중입니다. 현재도 디버깅을 위한 시험 운용이 가능하므로, 관련 산업분야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주)ICR 원자력발전소 내진시험 설비 전경



☎ 문의처

안전평가센터 / 오 현 석 센터장

T. 070-5083-2691 / hso@icrqa.com

# 유해위험기계기구의 KCs 및 CE인증 교육 진행



▣ ICR은 LG이노텍 안전관리자들의 검사기준 역량 확보를 통해 Compliance Risk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해위험기계기구의 KCs 및 CE인증'이라는 주제로 이틀 동안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교육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 CE 인증 및 국내 인증 안내,
- 자율안전확인신고 요구사항,
- Machinery Directive 요구사항,
- EN ISO 12100, EN 60204-1



# 유해위험기계기구의 KCs 및 CE인증 교육 진행



▣ 교육 후,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교육이 만족스러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ICR의 숙련된 전문가들은 고객사들이 인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과정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내 인증 및 CE인증** 교육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ICR 산업안전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인증 문의**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문의처**  
산업안전센터 / 박 현 준 전임연구원  
T.070-5083-2625 / phj@icrqa.com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6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 2부터 제77조의 8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 1. 무선기자재 적합성평가 완화(고시 제15조제1항)

#### 1.1 적합인증 기자재 무선기능 추가

(Wifi 6로 적합 인증받은 노트북) + Wifi 6e (6 GHz 주파수대역)

적합인증 기자재	+	무선기능 추가
Wifi 6(2.4 GHz, 5 GHz 주파수 대역)로 적합 인증받은 노트북 (기기부호 : LARN5, LARN8)		Wifi 6e(6 GHz 주파수 대역) 무선기능 추가 (기기부호 : LARN5B 추가)

위와 같은 경우 변경 신고 가능

#### ※ 개정 이후

적합성평가를 완료한 기자재에 무선기능을 추가하는 경우

- (형식기호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신고로 가능하도록 함
- 개정 전에는 신규만 가능, 개정 후 변경신고 가능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1.2 변경 신고가 불가한 경우

(적합등록 기자재 + 무선기능 추가 = 적합인증 기자재)

적합등록 기자재	+	무선기능 추가
RFID용 무선기기 (13.56 MHz 주파수 대역)로 적합등록한 기자재 (기기부호 : RFID3)	+	RFID용 무선기기 (900 MHz 주파수 대역) 무선기능 추가 (기기부호 : RFID1) → <b>적합인증 대상</b>

위와 같은 경우 **변경 신고 불가!**

※ 적합등록을 완료한 기자재에 무선기능 추가 →  
적합성평가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적합등록 → 적합인증) →  
변경신고 불가, 신규 적합인증 가능

## ▣ 2. 제조시기 표시방법 다양화(고시 별표 5)

**2.1 개정 전** – 상호, 기자재 명칭,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 및 제조국가  
(제조시기 표시방법 : 제조 연월로만 표기)

**개정 후** – 상호, 기자재 명칭, 모델명, **로트번호**, 제조자 및 제조국가  
(제조시기 표시방법 : 제조연월, 제조연월 조합으로  
이루어진 로트번호, 제조업자가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적합성평가 표시 중 '제조시기'는 제조 연월로만 표기하도록 하였으나, 로트번호, 제조업자가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으로도 표기 가능 !

## 2.2 제조시기 표기 유의사항

소비자가 제조 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보고 제조 연월을 알 수 없다면, 사용자 설명서, 포장,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조 연월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문의처

전파시험센터 / 손민기 선임연구원  
T. 070-5081-0023 / thsalsrl@icrqa.com